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5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한병도・위성곤・신정훈

박정현 • 이해식 • 모경종

이상식 • 양부남 • 김성화

강선우 • 이광희 • 채현일

윤건영 · 김성회 · 김영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 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.

그런데 현행법상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.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"5·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"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,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진실·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,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350호) 및 「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3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을 "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· ② (생 략)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 판소 재판관・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・국무위원・방송통 신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정보원 장·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· 금융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 · 고위공직자범 -----<u>진실·</u>화해를 죄수사처장 • 국세청장 • 검찰총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장 · 경찰청장 · 합동참모의장 · 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---한국은행 총재·특별감찰관 또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(이하 "헌 법재판소재판관등"이라 한다) 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 우에 대통령·대통령당선인 또 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 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 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